

입법예고

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2025. 5.

농 립 축 산 식 품 부
(농업금융정책과)

1. 개정이유

조합공동사업법인의 사업규모 확대에 따라 초기 출자금 규모를
상향하여 사업규모에 맞는 충분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함

2. 주요내용

가. 조합공동사업법인 초기 출자금을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(안 제11
조의2제1항제2호 개정)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해당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 없음

라. 기 타 : 해당 없음

대통령령 제 호

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의2제1항제2호 중 “3억원”을 “5억원”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조합공동사업법인의 설립인가기준에 관한 경과규정)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립인가를 신청한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설립인가 기준에 대해서는 제11조의2제1항제2호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1조의2(조합공동사업법인의 설립인가 기준 및 절차) ① 법 제112조의5제2항에 따른 조합 공동사업법인의 설립인가에 필 요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(생 략) 2. 회원의 자격이 있는 설립동 의자의 출자금납입확약총액이 <u>3억원</u> 이상일 것 ② (생 략)	제11조의2(조합공동사업법인의 설립인가 기준 및 절차) ① --- ----- ----- -----. 1. (현행과 같음) 2. ----- ----- <u>5억원</u> ----- ② (현행과 같음)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	
연 락 처	(044) 201 - 1764